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중에서 채용한 5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19. ~ 7.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칙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제1항 중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그 지원인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임용하며, 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u>청년정책 전문인력</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 <u>그 지</u> <u>원인력</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과 함께 면직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	
연 락 처	(044) 200 - 1986